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제출용]

등기번호	028718	
등록번호	110111-7712741	해산
상 호	주식회사 닷스에너지코리아 (dots energy korea Inc.)	
본 점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273번길 14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 방법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dotsenergy.com에 전자공고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전자공고 방법에 의한 공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

1주의 금액	금 100 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 주	
------------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 주	
보통주식	1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500,000 주	2021.01.28 변경
보통주식	500,000 주	2021.02.09 등기

목	적
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도소매, 수출입업	
1. 기타기계 및 장비도매업	
1.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연구개발업	
1. 전기, 전자, 공학 관련 연구개발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2022.04.27 삭제 2022.04.29 등기>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22.04.27 삭제 2022.04.29 등기>
1. 지능형 전력망사업	<2022.04.27 추가 2022.04.29 등기>
1. 시스템 통합 및 관리사업	<2022.04.27 추가 2022.04.29 등기>
1.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022.04.27 추가 2022.04.29 등기>
1. 신재생 에너지사업	<2022.04.27 추가 2022.04.29 등기>
1. 전지형 에너지저장장치 연구 개발 및 제조업	<2022.04.27 추가 2022.04.29 등기>
1. 전기차 충전장치 연구 개발 및 제조업	<2022.04.27 추가 2022.04.29 등기>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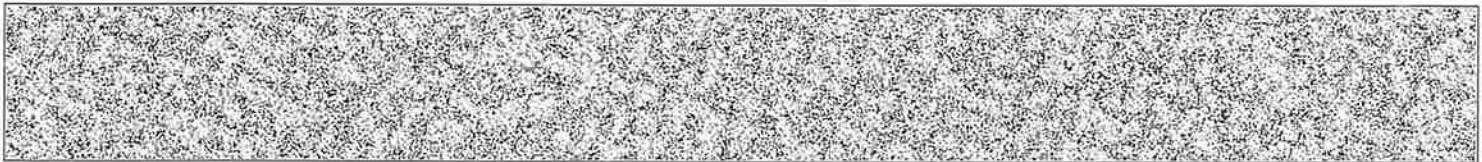
등기번호	028718
------	--------

1. 위 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2022.04.27 추가 2022.04.29 등기>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22.04.27 추가 2022.04.29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청산인 백은기 73070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131, 267동 801호(청라동, 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	
2026 년 02 월 27 일 취임	2026 년 03 월 09 일 등기

기 타 사 항	
1. 해산 2026년 2월 27일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한 해산	
	2026 년 03 월 09 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상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2)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본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다만 이사 또는 감사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도 같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3) 본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본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및 제411조를 위반한 경우 (5)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85조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해임을 권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에 한한다)를 해임하는 경우 (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 회사의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또는	



등기번호	028718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경업 또는 겸직을 한 경우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선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8) 주식매수선택권이 압류된 경우 (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해 본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 (10)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성립연월일	2020 년 12 월 11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2021년 01월 2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역4길 3, 4층(봉천동)으로부터 본점이전 2021 년 02 월 04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6년 03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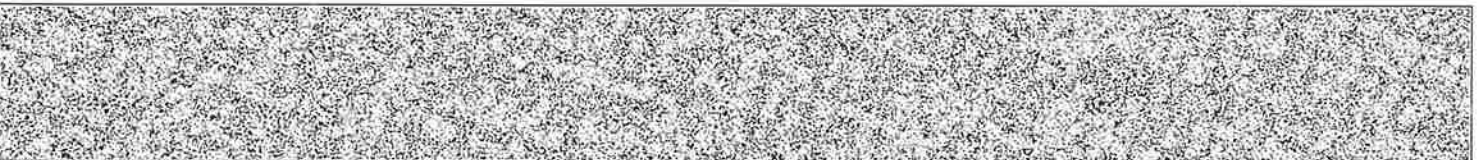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30403053701000133200652008211708T2E0N1R1E4T4N2I1C

발급확인번호 7183-AAZD-QMMX

발행일 2026/03/10